

# 광무양안과 결수연명부의 結負 비교

## — 慶州郡 府內面 校里, 仁旺里 사례 연구

金召羅\*

- |                |                 |
|----------------|-----------------|
| I. 머리말         | IV. 광무양전 이전의 결부 |
| II. 지역 및 자료 소개 | V. 맺음말          |
| III. 광무양안의 결부  |                 |

### • 국문초록

본고는 경상북도 경주군 부내면 교리, 인왕리를 대상으로 광무양안, 결수연명부, 토지대장을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결부 부담 변동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조선 후기 이후 전결세 부과 양상의 변화상과, 광무양전의 성격, 결부제의 역사성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대다수 필지를 양안에 기록한 광무양전과 달리, 결수연명부에는 적지 않은 필지가 누락되었다. 이들은 조선 후기 공적 징세 장부에서 陳田으로 기재되어 은루되던 경지였다. 광무양전은 장부상 陳田을 起田으로 파악하고 최대한 많은 필지를 양안에 기록함으로써 수세 실결을 확보하였다. 한편으로는 전품과 면적 조정으로 필지 간 결부수를 均平하게 조정하였다. 이는 당대에 이미 역사적 제도로 자리잡은 결부제를 지속적으로 운용하면서도, 均賦均稅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제어** : 광무양안, 결수연명부, 토지대장, 결부제, 은루결

---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 I. 머리말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여기고, 먹는 것은 농사를 근본으로 삼는다. 그래서 농사는 천하의 큰 근본이 되는 것이다.”<sup>1)</sup> 고종이 1871년(고종 8) 전국에 내린 勸農別諭의 내용이다. 조선은 건국 초부터 농업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다. 이는 자연히 농업의 토대가 되는 토지에 대한 강조로 이어졌다. 더욱이 토지는 인구와 더불어 주요한 재원이었기에, 국가 재정 운영 차원에서 토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건국 이래 끊임없이 양전에 대해 논의하고, 더 나은 토지제도를 고민하고, 20년마다 양전을 시행할 것을 『經國大典』에 규정해 둔 것은<sup>2)</sup> 그러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었다.

그러나 3년마다 꾸준히 작성된 호적과는 달리, 전국 단위의 양전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게 실시되었다. 특히 1720년의 경자양전 이후로는 대한제국기까지 전국적인 양전이 시행되지 못하였다. 물론, 양전의 필요성은 18~19세기에도 적지 않았다. 오히려 대동법이 시행된 이후 부세의 田稅化 현상이 나타나고, 갑오개혁기 이후 結價制가 자리 잡으면서 양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럼에도 높은 비용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으로 인해 전국적 양전은 시행되지 못하였고, 수령의 희망에 따라 실시하기로 한 읍양전마저 신청이 부진한 실정이었다.<sup>3)</sup>

그렇기에 경자양전 이후 180여 년 만에 시행된 대한제국의 광무양전은 그 의미가 남다른 것이었다. 의정부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양전 불가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1898년 광무양전의 시행을 단행한 고종의 모습에서<sup>4)</sup> 당대 재정 운영상 양전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양지아문, 지계아문 두 기관을 거치며 1904년까지 진행된 광무양전은 218개 군, 전국의 2/3에서 양안을 작성한 채 마무리되었다.<sup>5)</sup>

비록 모든 군현에서 양전이 실시되지 못하였고 최종 결과물인 광무양안 역시 결국 실 수세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였으나, 광무양전은 조선 후기 사회경제사 연구에서

1) 『高宗實錄』 고종 8년(1871) 1월 20일, “民以食爲天, 食以農爲本, 故農爲天下之大本者也.”

2) 『經國大典』 戶典 量田, “凡田, 分六等, 每二十年改量成籍, 藏於本曹·本道·本邑.”

3) 오인택, 「17·18세기 量田事業 研究」,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154~161면.

4) 왕현중, 『한국 근대 토지제도의 형성과 양안·지주와 농민의 등재 기록과 변화』, 해안, 2016, 201~203면.

5) 이영호, 『근대전환기 토지정책과 토지조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8, 130~131면.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 한국사의 주요 논쟁 중 하나인 자본주의 맹아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의 대립도 그 출발점은 광무양전, 양안 연구였다.<sup>6)</sup> 수많은 양전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조선 후기 사회의 여러 측면이 검토, 규명되어 왔다. 특히 토지소유권 문제, 국가적 王土思想, 戶名 사용 관행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기존 연구의 주요 쟁점은 ‘근대적 토지소유권’의 흔적을 광무양안에서 찾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호명으로 기재된 時主와 時作이 실제의 토지소유, 지주-소작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밝혀내는 데 관심이 쏠리면서, 광무양안의 성격을 토지소유권 장부로 볼 것이냐, 과세대장으로 볼 것이냐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이들 연구는 분명 조선 후기 사회상을 밝혀내는 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양안에 기록된 수많은 정보 중 토지소유권과 관련된 항목들에만 천착해 온 경향이 없지 않다. 2000년대 들어 광무양전 관련 논의가 사그라든 것은 광무양안의 자료적 소명이 다해서가 아니라, 그에 담긴 정보를 온전히 활용해 내지 못한 연구자들의 한계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토지 소유 규모, 계층 문제 등을 분석하기에 앞서 다시금 주목해야 할 것은, 200여 년의 공백을 딛고 전국적 양전을 추진한 시대적 배경, 대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종이 양전을 결행해야만 했던 사회적 분위기이다. 당대 사회의 구성원들은 이 거대한 양전 사업을 통해 무엇을 기대했고, 무엇을 목표로 하였는가. 본 논문은 이러한 질문을 던지며, 이에 대답하기 위해 광무양안의 기본적인 수세 문제로 눈을 돌려보고자 한다. 특히 양안에 기록된 다양한 정보 중, 結負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해 볼 것이다.

광무양전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과 광무양안의 수세 장부적 성격에 대해 최근 몇 개의 연구들이 제시된 바 있다.<sup>7)</sup> 이들 연구에서는 광무양전에서 지목을 고려한 결부 책정으로 토지 생산력 격차를 해소하고자 했고, 지역별로 결부 산정에 차등을 두어 여타 부역, 운송비 등을 감안한 부세 총량의 균등함을 달성하고자 했음에 주목하였다.

6) 주요 연구로는 김용섭, 「光武年間の 量田・地契事業」, 『한국근대농업사연구』 下, 일조각, 1984; 이영훈, 『朝鮮後期社會經濟史』, 한길사, 1988; 김홍식 외, 『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 민음사, 1990; \_\_\_\_\_,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연구』, 민음사, 1997; 한국역사연구회 토지대장반,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민음사, 1995; \_\_\_\_\_, 『대한제국의 토지제도와 근대』, 혜안, 2010 등이 있다.

7) 김소라,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을 통해 본 광무양전의 성격-忠南 韓山郡 昌外里와 慶北 慶州郡 九政洞 사례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김건태, 『대한제국의 양전』, 경인문화사, 2018.

특히 광무양안을 식민지기 토지대장과 대조함으로써 그 자료적 특성을 좀 더 확연하게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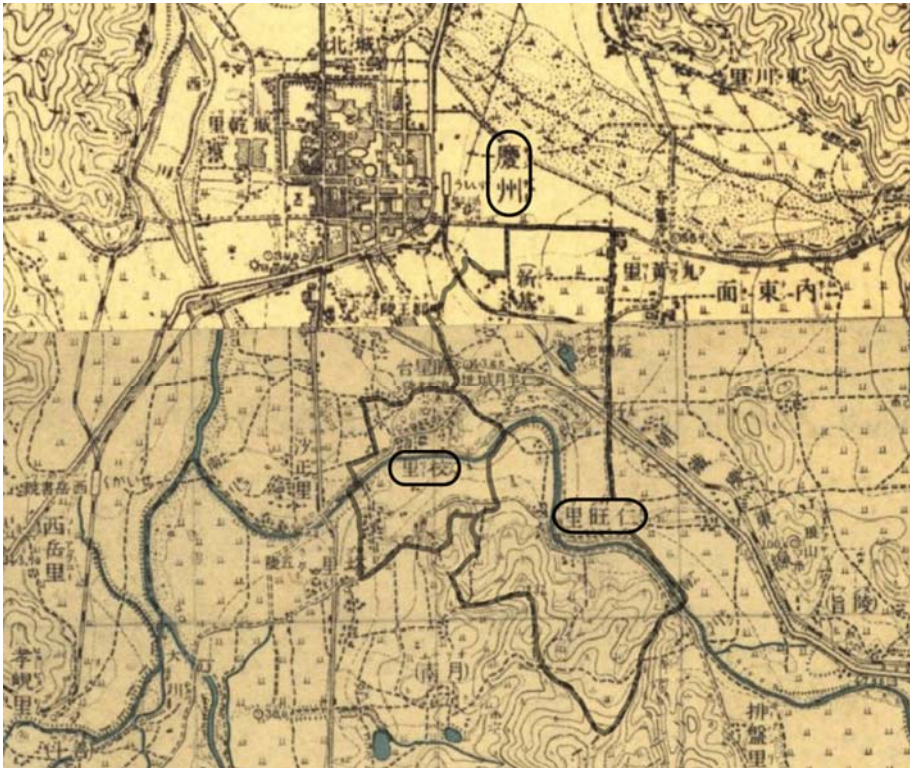
그럼에도 여전히 아쉬움은 남는다. 대한제국기의 광무양안과 식민지기의 토지대장을 대조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들을 조선 후기 부세 관련 기록과도 비교해본다면 어떨까. 대한제국기는 물론, 조선 후기의 田結稅 수취 양상까지도 명확히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는 광무양안과 토지대장 두 자료의 비교를 넘어서, 結數連名簿에까지 시야를 넓혀 세 자료의 시계열적 비교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특히 앞서 언급했듯 결부 문제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면서 조선 후기의 지방사회에서 결부가 어떻게 매겨지고 있었는지, 이것이 광무양전을 거치며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II. 지역 및 자료 소개

慶尙北道 慶州郡 府內面의 校里(현 교동)와 仁旺里(현 인왕동), 두 개 마을이 이번 논문에서 주로 살펴볼 지역이다. 이 두 마을은 1914년 총독부령 제111호로 부, 군, 면 통폐합이 시행될 때 교리는 기존의 부내면 泉源里와 교리 일부가, 인왕리는 기왕의 부내면 인왕리, 新基里, 교리, 內東面 沙里 각 일부가 합쳐져 만들어졌다.<sup>8)</sup> <그림 1>의 지도에서 보이듯 교리와 인왕리는 경주 읍내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교리의 경우 이름에서 엿보이듯 경주 향교가 자리하고 있다. 향교 바로 옆에는 경주 최부자집으로 유명한 경주 교동 최씨고택이 위엄을 뽐낸다. 교리와 인왕리에 걸쳐 형산강 지류가 흐르고 있다. 또한, 두 개 리에는 현재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주 역사 유적 월성지구가 자리하고 있는데, 왕릉을 포함한 고분군, 계림, 첨성대, 동궁과 월지 등이 자리하고 있다. 기존의 광무양안-토지대장 대조연구가 주로 읍내와는 거리가 먼 鄕村 지역을 다루었던 것과 달리, 본고는 향교와 유명 고택, 사적지가 존재하는 두 개 마을을 연구해봄으로써 그간 발견하지 못했던 또 다른 양상을 살펴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sup>9)</sup>

8)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上, 龍溪書舍, 487면.

9) 경주의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을 비교, 분석한 논문은 두 편이 제출된 바 있다. 김소라, 앞의 2014 논문에서는 경주군 내동면 구정동을, 김건태, 앞의 2018 책 4장 1절에서는 경주군 내남면 부지리를



〈그림 1〉 20세기 초 경주군 읍내와 교리, 인왕리 전경. 붉은 실선은 리 경계 표시

이번 연구에서는 머리말에서 언급했듯,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은 물론 식민지기에 조선 후기의 부세 장부를 토대로 작성한 결수연명부까지 함께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경주군 부내면의 광무양안은 광무 7년인 1903년 11월에 작성되었다.<sup>10)</sup> 이는 양지아문에서 작성한 野草를 활용해 지계아문에서 만든 中草本이다.<sup>11)</sup> 양안의 형식은 <그림 2>에서 보이듯 양지아문에서 작성한 것과 유사하다.

대상으로 비교연구가 수행되었다.

10) 『慶尙北道慶州郡量案』,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古大4258.5-17).

11) 김건태, 앞의 2018 책, 194~195면.

|      |      |      |      |      |
|------|------|------|------|------|
| 宿宇   |      |      |      |      |
| 第一座  | 第二座  | 第三座  | 第四座  | 第五座  |
| 北    | 北    | 北    | 北    | 北    |
| 南    | 南    | 南    | 南    | 南    |
| 東    | 東    | 東    | 東    | 東    |
| 西    | 西    | 西    | 西    | 西    |
| 田發今申 | 田守甲鄭 | 田校鄉南 | 田得性趙 | 田發今申 |
| 七十   | 六十五  | 六十   | 六十   | 七十   |
| 田校鄉北 | 田得性趙 | 田出金  | 田校鄉北 | 田校鄉北 |
| 積三   | 積三   | 積三   | 積三   | 積三   |
| 時主   | 時主   | 時主   | 時主   | 時主   |
| 鄭甲守  | 鄉校田  | 時主   | 時主   | 時主   |
| 五十二  |      |      |      |      |

〈그림 2〉《慶尙北道慶州郡量案》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古大4258.5-17)

한편, 해당 지역의 토지대장은<sup>12)</sup> 대정 원년인 1912년 9월에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광무양안과 9년이 채 안 되는 시차가 존재하는 셈이다. 토지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지적도<sup>13)</sup> 역시 활용 가능하다. 이에 본고는 JigsawMap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교리와 인왕리 광무양안의 量田圖를 그리고, 토지대장 및 지적도와 매칭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sup>14)</sup> 이에 더해 경주 부내면의 『결수연명부』를<sup>15)</sup> 매칭하는 과정을 추가하였다.

조선총독부가 토지조사사업을 위해 생산한 장부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부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① 토지조사 전에 마련한 圖簿: 결수연명부, 과세지견취도, 국유지대장
- ② 토지조사과정에서 생산한 도부: 토지신고서, 실지조사부, 원도와 지적도, 토지

12) 경주시청 소장.

13) 국가기록원 소장.

14) JigsawMap 소프트웨어의 작동 원리에 대한 설명은 <http://hcil.snu.ac.kr/research/jigsawmap> 을 참고할 수 있다. JigsawMap을 활용한 광무양안 연구방법론에 대해서는 김건태, 앞의 2018 책 1장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본고의 연구 방법도 이와 동일하다.

15) 경주시청 소장.

## 조사부

- ③ 토지조사 이후 작성한 도부: 이동지신고서, 이동지조사서, 토지조사부등본, 지적도, 토지대장, 지세명기장, 토지등기부 등<sup>16)</sup>

이 중 결수연명부는 1909~1910년, 1911~1912년 두 번에 걸쳐 전국적으로 만들어진, 토지대장 작성 완료 이전 시기의 개인별 징세대장이었다. 면 단위로 작성되었는데, 면내 토지를 소유한 자가 보유 필지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기록해 제출하면 면에서 이를 토지 소유자의 거주 동리별로 분류하여 편철하였다.<sup>17)</sup> 전국에 걸쳐 작성되었음에도, 토지 조사 사업 완료 이후 대부분이 폐기되어 현존하는 장부는 거의 없다. 현재까지는 경남 창원군의 결수연명부가 학계에 소개되어 주로 연구되어 왔다.<sup>18)</sup> 본 연구에 활용된 경주시청 소장 결수연명부의 자료적 가치 역시 무척 높다 하겠다.<sup>19)</sup>

<그림 3>과 <그림 4>는 경주 결수연명부의 모습이다. 1911년 11월 10일 제정된 <結數連名簿規則>(조선총독부령 제143호)을 토대로 1912년 1~2월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sup>20)</sup> 경주군 부내면에서 원래 신기리, 교리, 인왕리, 천원리 네 개 동리의 정보를 모아 편철했다가, 1914년의 행정구역 통폐합 이후 신기리와 천원리가 각기 인왕리와 교리에 편입되면서 붉은 선으로 리명을 표지에서 삭제했음을 알 수 있다. 연명부 내의 내용 역시 수정하여 신기리와 천원리를 일일이 인왕리와 교리로 바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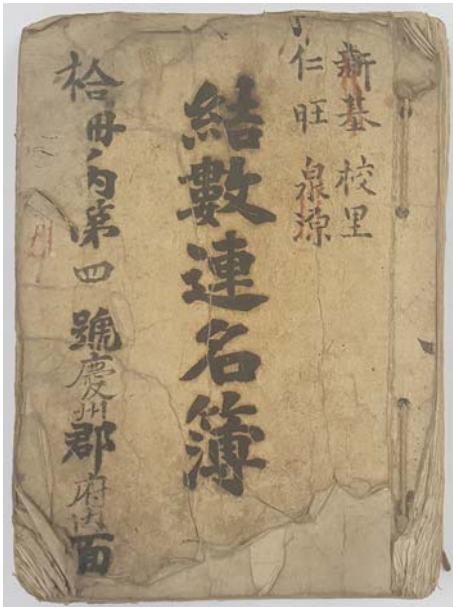
16) 최원규, 「창원군 토지조사사업 관계장부의 종류와 성격」, 한국역사연구회 토지대장연구반, 『일제의 창원군 토지조사와 장부』, 선인, 2011, 21~22면.

17) 최원규, 앞의 2011 논문, 26~28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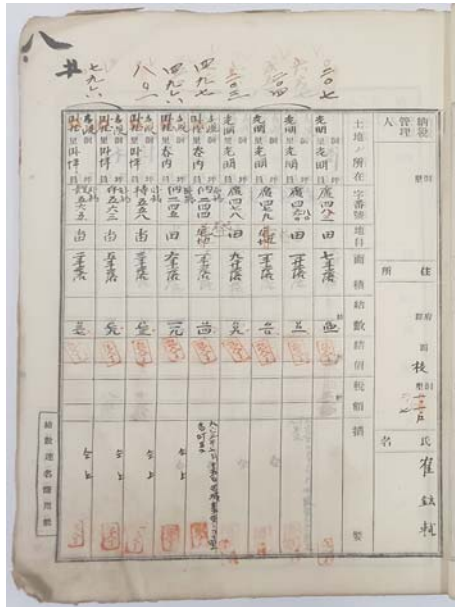
18) 조석곤, 『한국 근대 토지제도의 형성』, 해남, 2003; 한국역사연구회 토지대장연구반, 앞의 2011 책; \_\_\_\_\_, 『일제의 창원군 토지조사사업』, 선인, 2013.

19) 본 연구에서 활용한 경주시청 소장 결수연명부는 경주시, 『慶州地籍史』, 우물, 2007, 12면에 실린 결수연명부 표지 사진을 발견한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김건태 교수의 소개와 도움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깊은 감사를 표한다.

20) 소작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는 칸이 없는 것으로 보아 1910년이 아닌, 1912년에 작성된 결수연명부로 추정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배병일, 「일제하 토지조사사업에 있어서의 결수연명부」, 『한양법학』 26, 2015 참조.



〈그림 3〉 경주 부내면 결수연명부 표지



〈그림 4〉 부내면 결수연명부 속지

결수연명부에는 일반적으로 납세 관리인과 지주의 주소 및 성명, 토지의 소재[洞/里, 坪/員], 字番號, 지목, 면적, 결수, 결가, 세액, 적요 등이 적혀 있는데, 경주군의 결수연명부에는 독특하게도 토지 소유주의 호적상 통호수가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다. <그림 4>에서 본디 1통 1호였던 주소가 2통 7호로 수정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서식 상단에 기재된 숫자는 토지 조사 사업이 진행되면서 각 필지에 부여된 지번이다. 이 지번을 토대로 광무양안-토지대장의 대조 결과물과 결수연명부의 내용을 연결해 볼 수 있었다.

즉,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식민지기 지적도의 동리 경계를 기준으로, 교리와 인왕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광무양안에서 찾아낸다. 이후 JigsawMap의 도움을 받아 양전 경로를 그려내고, 지적도와 대조하여 필지별로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에 기재된 정보를 매칭시킨다. 이후 결수연명부에서 매 필지 상단에 기재된 지번을 참고하여 기왕의 매칭 정보와 한 번 더 연결시킨다. 그러면 1903년 11월의 광무양안, 1912년 2월의 결수연명부, 그리고 동년 9월의 토지대장 기재 내용을 상호 대조해 볼 수 있다.

이때 상기해야 할 것은, 결수연명부의 기록이 기존 지역 사회에서 활용되던 징세 장부의 내용을 참고하며 완성되었다는 점이다. 1909년의 결수연명부 작성방침에 따르면, “사람별 결수의 조사는 주로 신고에 의할 것”이라 명시하면서도 “신고결수의 타당성 여부는 舊量案 기타 서류를 참고하고, 혹은 실지에 나아가고, 혹은 지방의 知事人에게 문의하여 판정할 것”이라고 하였다. 신고된 내용을 舊양안 등에 근거하여 확인해 볼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舊양안은 광무양안 이전의 양안을 지칭한다. 한편 1910년 개정된 결수연명부 작성방침에서는 “新舊量案 기타 종래 지세의 징수에 사용하던 장부들을 수집”하여 그 집계와 신고 내용을 대조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sup>21)</sup>

종합하면 결수연명부 작성 시,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양안, 행심책, 깃기 등 각종 지세 관련 장부들을 총동원하여 신고 내용과 대조한 뒤, 최종적으로 장부를 완성했음을 알 수 있다. 경주 결수연명부에 기재된 자호와 결부수는 광무양안상 교리, 인왕리 부분의 자호, 결부수와 상이하다. 따라서 부내면 연명부의 내용은 광무양안 이전의 징세 상황을 반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전해오는 경주 지역의 행심책은 1871년 見谷同<sup>22)</sup>, 1883년 東海面 中道洞,<sup>23)</sup> 1888년 水只谷 九政洞,<sup>24)</sup> 1893년 추정 西面 道溪里<sup>25)</sup>에 관한 것이 남아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부내면 교리, 인왕리에도 19세기 후반에 활용되던 나름의 행심책 및 주판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결과적으로 1912년에 작성되었음에도 결수연명부에는 광무양안 이전의 필지별 결부수가 기재되어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세 장부의 대조를 통해 조선 후기-대한제국기-식민지기로 이어지는 시계열적 분석이 가능해진다.

21) 조석곤, 앞의 2003 책, 278~280면.

22) 『慶尙北道慶州郡量案』,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古大4258.5-17a).

23) 『慶尙北道慶州郡量案』,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古大4258.5-17b).

24) 『水只谷九政小冊』,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國學振興研究事業推進委員會 編, 『古文書集成』 62 慶州 蘇亭 慶州李氏篇, 2002, 583면.

25) 『慶尙北道慶州郡量案』,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古大4258.5-17c).

### Ⅲ. 광무양안의 결부

결수연명부와의 비교에 앞서,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의 대조를 통해 교리, 인왕리에 서의 광무양전 상황을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주군 광무양안에서 식민지기의 교리 경계 내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번 昃55~宿1, 列39~張35, 張58, 寒15~寒23, 寒37~來85로, 총 365필지이다. 인왕리는 宿2~列38, 張36~57, 張59~寒14, 寒24~36, 來86~藏2, 藏7~成35에 해당하여 총 914필지이다. 한편, 토지대장상 교리는 273필지, 인왕리는 909필지로 구획되었다. 두 개 마을의 장부상 지목 현황은 다음과 같다.<sup>26)</sup> 교리는 밭의 비중이 높은 편이고, 인왕리는 교리에 비해서는 논이 많으나 밭의 비중 역시 적지 않다. 앞서 언급하였듯 두 마을에는 고분군 등이 존재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지대가 평탄하지 않고 낮은 언덕이 많은 편이다.

〈표 1〉 교리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의 지목별 현황

단위: 필지, 尺, 坪

| 지목  | 자료 | 광무양안       |                | 토지대장       |                |
|-----|----|------------|----------------|------------|----------------|
|     |    | 필지수        | 면적(尺)          | 필지수        | 면적(坪)          |
| 답   |    | 34 (9.3)   | 32,989 (10.6)  | 52 (19.9)  | 21,242 (14.5)  |
| 전   |    | 293 (80.3) | 264,321 (84.6) | 142 (54.4) | 103,916 (71.1) |
| 대   |    | 38 (10.4)  | 15,212 (4.9)   | 67 (25.7)  | 21,066 (14.4)  |
| 소계  |    | 365 (100)  | 312,522 (100)  | 261 (100)  | 146,224 (100)  |
| 社寺地 |    |            |                | 1          | 2,112          |
| 분묘지 |    |            |                | 4          | 533            |
| 임야  |    |            |                | 7          | 13,578         |
| 합계  |    |            |                | 273        | 162,447        |

비고: (비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26) 광무양안상 지목은 원래 답, 전으로만 표기되어 있으나, 양안에 가옥 칸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厓로 분류하였다.

〈표 2〉 인왕리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의 지목별 현황

단위: 필지, 尺, 坪

| 지목  | 자료 | 광무양안       |                | 토지대장       |                |
|-----|----|------------|----------------|------------|----------------|
|     |    | 필지수        | 면적(尺)          | 필지수        | 면적(坪)          |
| 답   |    | 344 (37.6) | 431,587 (46.1) | 315 (36.1) | 208,610 (44.4) |
| 전   |    | 523 (57.2) | 484,663 (51.8) | 426 (48.8) | 243,682 (51.9) |
| 대   |    | 47 (5.1)   | 19,482 (2.1)   | 132 (15.1) | 17,231 (3.7)   |
| 소계  |    | 914 (100)  | 935,732 (100)  | 873 (100)  | 469,523 (100)  |
| 社寺地 |    |            |                | 1          | 239            |
| 분묘지 |    |            |                | 19         | 5,588          |
| 임야  |    |            |                | 14         | 21,958         |
| 池沼  |    |            |                | 2          | 6,720          |
| 합계  |    |            |                | 909        | 504,028        |

비고: (비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특기할만한 사항은 두 개 마을에서 1910년대 경주군 향교와 최부자집 主孫인 崔浚(1884~1970)이 보유한 필지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답, 전, 대 지목에서만 향교는 55필지(31,893평)를, 최준은 37필지(35,660평)를 소유한 것으로 토지대장에 기록되어 있다.<sup>27)</sup> 이는 각각 두 개 리 총면적의 5.2%, 5.8%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이다. 이러한 향교와 교동 최씨 집안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들에 대한 전결세 부과 양태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에 기재된 필지 개수가 각기 다르고 모든 필지가 일대일로 상호 연결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JigsawMap을 활용한 매칭 과정에서 적절한 合筆과 分筆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다음 표와 같은 네 가지 매칭 유형이 발생하였다. 양안-대장 연결 과정을 통해 교리는 총 391쌍, 인왕리는 총 991쌍의 매칭이 이루어졌다.

27) 토지조사사업 당시 경주군 향교는 교리에서 40필지(23,326평), 인왕리에서 15필지(8,567평)를 소유하고 있었다. 최준은 교리에서 20필지(17,133평), 인왕리에서 17필지(18,527평)를 보유했다. 이외에도 교리에서 향교는 社寺地 1필지(2,112평)를, 최준은 임야 2필지(2,432평)를 추가로 소유하고 있었다.

〈표 3〉 교리 광무양안과 토지대장 매칭 유형

단위: 필지

| 매칭 유형           | 광무양안 | 토지대장 | 분석대상 필지 |
|-----------------|------|------|---------|
| 양안 1필지 ↔ 대장 1필지 | 167  | 167  | 167     |
| 양안 1필지 ↔ 대장 多필지 | 38   | 168  | 168     |
| 양안 多필지 ↔ 대장 1필지 | 45   | 21   | 45      |
| 양안 多필지 ↔ 대장 多필지 | 8    | 7    | 11      |
| 합계              |      |      | 391     |

〈표 4〉 인왕리 광무양안과 토지대장 매칭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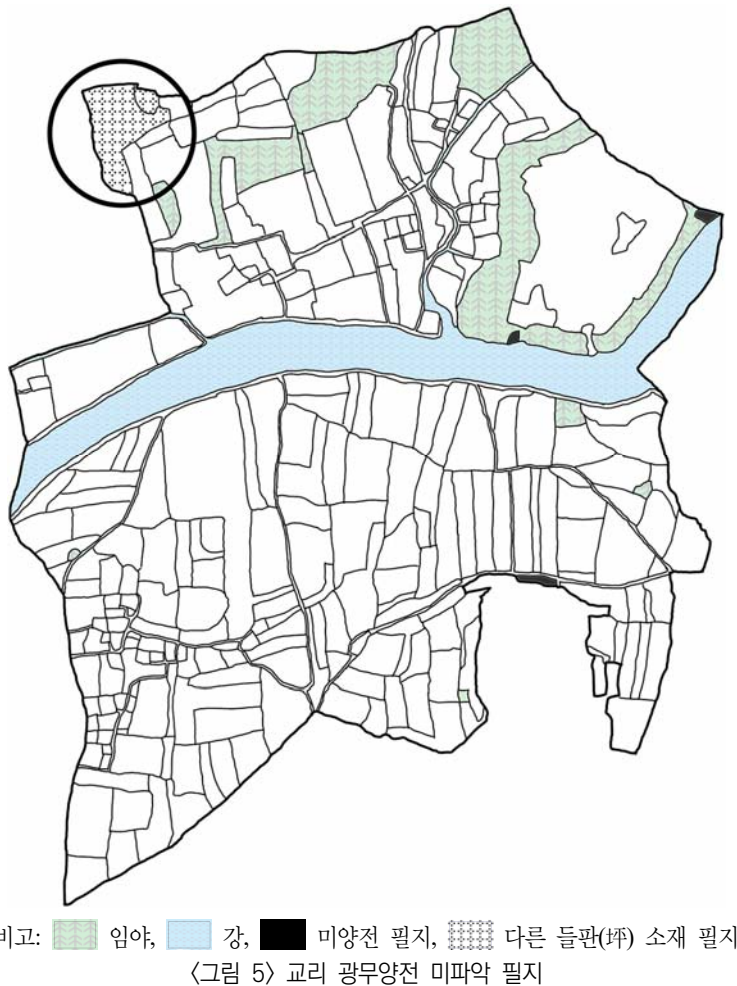
단위: 필지

| 매칭 유형           | 광무양안 | 토지대장 | 분석대상 필지 |
|-----------------|------|------|---------|
| 양안 1필지 ↔ 대장 1필지 | 437  | 437  | 437     |
| 양안 1필지 ↔ 대장 多필지 | 120  | 378  | 378     |
| 양안 多필지 ↔ 대장 1필지 | 143  | 66   | 143     |
| 양안 多필지 ↔ 대장 多필지 | 22   | 21   | 33      |
| 합계              |      |      | 991     |

경주군 광무양안에는 陳田 기록이 거의 없다.<sup>28)</sup> 양안-대장 대조 결과를 살펴보면, 실제로도 현실에서 陳田 자체가 거의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와 <그림 6>은 두 개 마을에서 토지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광무양안에는 해당 필지의 기록이 없는 전답을 표시하고 있다. 즉, 어둡게 색칠된 부분은 광무양전 당시 미양전된 필지들이다. 동그라미가 그려진 부분은 광무양안에서 해당하는 지번을 정확히 찾아내지 못해 매칭을 수행하지 못한 필지들로, 분석에서 제외된 전답들이다. 우선 교리의 경우, 대부분의 필지가 양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왕리에서도 미양전된 필지는 대부분 아주 소규모의 집터이거나 언덕에 위치하여 경작 상태가 불안정했을 것으로

28) 이러한 현상을 토대로 적어도 양지아문에서는 실경작지를 중심으로 양전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왕현중, 「대한제국기 畵田·地契事業의 추진과정과 성격」, 한국역사연구회 토지대장반,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민음사, 1995, 82면).

추정되는 전답들로, 대다수의 필지는 양안에 기록되어 있었다. 미양전된 필지들의 위치나 규모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들 모두가 陳田이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경작 중임에도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낮은 續田, 소규모 농지 등이 광무양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안정적으로 소출을 낼 수 있는 상태의 필지들이 양전 대상이었던 것이다.<sup>29)</sup>



29) 이러한 현상은 여타 지역에서도 발견된다. 김소라, 앞의 2014 논문, 21~23면 참조.



비고:  임야,  강 및 池沼,  미양전 필지,  다른 들판(坪) 소재 필지  
〈그림 6〉 인왕리 광무양전 미파악 필지

광무양전 당시 교리와 인왕리에서는 어떠한 수준으로 결부가 산정되었을까?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을 대조한 기존 연구에서는 광무양전에서 지목별, 지역별 차등을 감안하며 결부가 책정되었음에 주목한 바 있다.<sup>30)</sup> 교리와 인왕리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었던 지역들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 읍치와 가까운 마을들이라는 점, 부세 수취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향교와 사적지, 유력 고택이 있다는 점, 납부 과정에서 운송비 부담이 컸던 경상도 지역이라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를 유념하면서 양안상 전품과 적척, 결부수를 살펴보자.

〈표 5〉 교리 광무양안 전품

단위: 필지

| 전품 \ 지목 | 답  | 전   | 대  | 합계  |
|---------|----|-----|----|-----|
| 1       |    | 2   | 38 | 40  |
| 2       | 3  | 69  |    | 72  |
| 3       | 19 | 70  |    | 89  |
| 4       | 12 | 111 |    | 123 |
| 5       |    | 39  |    | 39  |
| 6       |    | 2   |    | 2   |
| 합계      | 34 | 293 | 38 | 365 |

〈표 6〉 인왕리 광무양안 전품

단위: 필지

| 전품 \ 지목 | 답   | 전   | 대  | 합계  |
|---------|-----|-----|----|-----|
| 1       |     |     | 47 | 47  |
| 2       | 14  | 52  |    | 66  |
| 3       | 178 | 146 |    | 324 |
| 4       | 137 | 216 |    | 353 |
| 5       | 15  | 96  |    | 111 |
| 6       |     | 13  |    | 13  |
| 합계      | 344 | 523 | 47 | 914 |

30) 김소라, 앞의 2014 논문; 김건태, 앞의 2018 책.

우선 눈에 띄는 점은 두 마을의 垞地가 모두 1등으로 기록되었다는 점이다. 내동면 구정동과 내남면 부지리에서도 대지는 전부 1등을 받은 것을 감안한다면,<sup>31)</sup> 경주 양전 시 대지의 전품은 1등으로 한다는 원칙이 있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여타 지역 사례에서도 답, 전에 비해 집터는 높은 전품을 받았다. 조선 초기부터 垞田은 일반적인 밭에 비해 면적당 소출량이 많다는 인식이 있었기에<sup>32)</sup> 나타난 양전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두 개 마을에는 향교와 사적지가 자리한 만큼, 양안상 應頃로 분류된 면세지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교리에서는 강당, 대성전, 명륜당 등 향교 부속 건물들이 들어선 대지, 인왕리에서는 昔王廟, 宋尤庵影堂 등의 家垞에 응탈 표기가 있다. 그런데 이들 응탈 필지들은 양안에서 모두 1등급 대지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면세될 필지들에 1등 전품을 주어 높은 결부를 산정 받게 함으로써, 元結數를 높이고자 한 의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타 비교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지역별, 지목별로 차등적인 전품 책정 양상이 발견된다. 두 마을의 논과 밭 중 1등을 받은 곳은 교리의 田 2필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모두 향교전으로 응탈된 곳이었다. 결과적으로 전결세 수취 대상 필지는 모두 2등 이하 전품을 받았던 것이다. 이는 충청도에 소재한 필지들이 받은 전품보다 낮은 수준의 것이다.<sup>33)</sup> 지역별 운송비와 부세 부담 차이를 고려하여 경상도의 전품을 낮게 책정하는 경향성이 두 개 마을에서도 나타난 것이다. 지목별로는 밭이 논보다 낮은 전품을 받았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6단계의 전품을 모든 지목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했다. 그러나, 지목별 토지 생산력 격차를 감안하여 동일한 면적일 때 답보다 전에 낮은 결부를 부여하기 위해 전품을 상대적으로 낮게 매겼던 것이다.

지역차, 지목차를 고려하여 실제 토지 생산력과는 다르게 전품을 조정했음은, 동일한 필지가 광무양전에서 받은 전품과 토지조사사업에서 판정받은 등급을 비교해보면 확연하게 드러난다. <표 7>을 보면 양안상 전품 3, 4, 5등 간에는 토지대장에서도

31) 김소라, 앞의 2014 논문, 22면; 김진태 앞의 2018 책, 204면.

32) 김소라, 앞의 2014 논문, 23면.

33) 충청도 지역의 광무양안 전품 산정 양상은 미야지마 히로시, 「光武量案의 역사적 성격」, 김홍식 외, 『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 민음사, 1990; 김소라, 앞의 2014 논문; \_\_\_\_\_, 「광무양안에 기재된 방향, 면적, 등급의 의미-토지대장과의 비교연구」, 『고문서연구』 57, 한국고문서학회, 2020; 김진태, 앞의 2018 책 2장 1절 참조.

어느 정도 등급 격차가 있는 듯 보이기도 하나, 양안에서 4등을 받은 필지들이 대장에서는 7~9등급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두 개 장부 간 토지 등급의 상관관계가 불분명한 것이다. 토지조사사업 당시에는 전, 답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대는 임대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표준을 세우고 전국적으로 고르게 등급을 매기기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했다.<sup>34)</sup> 반면, 광무양안의 전품은 그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均賦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토지 생산력 이외의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며 조정된 것이었다.

〈표 7〉 교리, 인왕리 양안상 전품과 대장상 등급 비교

단위: 필지

| 양안 \ 대장 | 6   | 7   | 8   | 9   | 10 | 11 | 합계   |
|---------|-----|-----|-----|-----|----|----|------|
| 1       |     | 8   | 15  | 66  |    |    | 89   |
| 2       | 17  | 8   | 33  | 94  | 2  |    | 154  |
| 3       | 87  | 137 | 116 | 82  | 20 | 1  | 443  |
| 4       | 54  | 156 | 127 | 123 | 39 | 10 | 509  |
| 5       | 13  | 44  | 26  | 44  | 27 | 14 | 168  |
| 6       |     | 2   | 3   | 6   | 4  |    | 15   |
| 합계      | 171 | 355 | 320 | 415 | 92 | 25 | 1378 |

그렇다면 전품과 함께 결부량을 결정하는 요소였던 면적 측량은 어떠했는지 살펴보자. 광무양안에는 매 필지의 가로, 세로 길이와 함께 개별 필지의 면적인 적척수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양지아문에서 작성한 양안에는 필지의 모양을 도형으로 표시한 전답 도형도도 그려져 있다(<그림 2> 참고).<sup>35)</sup> 그림으로 필지의 모형을 그려 두고 일일이 면적을 계산해 둔 것을 보면 양안에 기록된 적척수가 실면적에 가깝지 않을까

34) 조석곤, 앞의 2003 책, 303~323면.

35) 기존 연구에서는 해당 정보가 기재된 것 자체에 높은 의미를 부여하며 광무양전이 이전과 달리 토지의 절대면적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양전사업상의 한 단계 발전'이자 '이전 양안에 비해 달라지고 진전된 모습'으로 평가되었다(왕현중, 앞의 1995 논문, 80~81면; 이영호, 앞의 2018 책, 66면). 그러나 최근 제출된 광무양안-토지대장 비교연구를 통해 광무양안에 기재된 면적이 매 필지의 실면적과는 상이하며, 결부수 조절을 위해 재조정된 수치라는 견해가 제기되었다(김소라, 앞의 2014 논문; \_\_\_\_\_, 앞의 2020 논문; 김건태, 앞의 2018 책).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실제로 실면적과 적척수의 비율(면적비)을 계산해보면 이러한 기대와는 거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다음의 표는 교리와 인왕리의 지목별 면적비를 계산해 본 것이다. 같은 필지에 대해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에 기록된 면적 정보를 대조하여 지목별로 나열한 결과이다. 양안의 면적을 평으로 환산한 값이 토지대장상의 면적(坪)을 1로 놓았을 때 얼마로 나오는지 계산해 보았다.<sup>36)</sup> 예를 들어, 어느 한 필지의 면적이 광무양안에는 50평, 토지대장에는 100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 필지의 면적비는 0.5가 된다.

〈표 8〉 교리 지목별 면적비

단위: 필지

| 양안 지목<br>면적비 구간 | 답        | 전          | 대         |
|-----------------|----------|------------|-----------|
| 0.5 미만          | 9 (25.0) | 104 (32.9) | 21 (53.9) |
| 0.5 이상~0.6 미만   | 4 (11.1) | 36 (11.4)  | 3 (7.7)   |
| 0.6 이상~0.7 미만   | 7 (19.4) | 64 (20.3)  | 8 (20.5)  |
| 0.7 이상~0.8 미만   | 7 (19.4) | 57 (18.0)  | 3 (7.7)   |
| 0.8 이상~0.9 미만   | 3 (8.3)  | 43 (13.6)  | 4 (10.3)  |
| 0.9 이상~1.0 미만   | 5 (13.9) | 7 (2.2)    |           |
| 1.0 이상          | 1 (2.8)  | 5 (1.6)    |           |
| 합계              | 36 (100) | 316 (100)  | 39 (100)  |

비고: (비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36) 조선 후기의 양전척은 1척이 약 1.03m였으나, 1902년 제정된 도량형 규칙에 의해 1周尺이 20cm, 양전척 1척이 5주척으로 정비되면서 1m로 정해졌다고 한다. 본고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양전척 1척=1m로 두고 坪으로 환산하여 토지대장과 면적비를 계산하였다. 양전척의 길이에 관해서는 박홍수, 「李朝尺度에 關한 研究」, 『대동문화연구』 4,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67, 215~223면; 김건태, 「갑술·경자양전의 성격-칠곡 석전 광주이씨가 전답안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31, 한국역사연구회, 1999, 108면; 왕현중, 앞의 2016 책, 324면 참고.

〈표 9〉 인왕리 지목별 면적비

단위: 필지

| 면적비 구간 \ 양안 지목 | 답          | 전          | 대         |
|----------------|------------|------------|-----------|
| 0.5 미만         | 38 (10.5)  | 172 (29.8) | 22 (42.3) |
| 0.5 이상~0.6 미만  | 45 (12.4)  | 116 (20.1) | 12 (23.1) |
| 0.6 이상~0.7 미만  | 61 (16.9)  | 118 (20.5) | 10 (19.2) |
| 0.7 이상~0.8 미만  | 109 (30.1) | 109 (18.9) | 2 (3.9)   |
| 0.8 이상~0.9 미만  | 72 (19.9)  | 46 (8.0)   | 5 (9.6)   |
| 0.9 이상~1.0 미만  | 21 (5.8)   | 8 (1.4)    | 1 (1.9)   |
| 1.0 이상         | 16 (4.4)   | 8 (1.4)    |           |
| 합계             | 362 (100)  | 577 (100)  | 52 (100)  |

비고: (비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두 개 리에서 양안-대장 대조가 가능한 필지의 면적비를 모두 구해보니, 양안상의 적척수는 실면적보다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두 마을 모두에서 실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면적이 양안에 기록된 필지가 상당히 많았다. 또한, 두 장부를 대조한 선행 연구의 결과들처럼 여기에서도 지목별 면적비 차이가 발견되었다. 답, 전, 대 순으로 ‘양안/대장’의 면적비가 낮아지는 것이다. 교리의 지목별 평균 면적비는 답 0.67, 전 0.60, 대 0.51이었고, 인왕리에서는 답 0.73, 전 0.59, 대 0.54였다. 결부수 조정을 위해 면적 축소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지목별로 차등을 두며 그 비율을 조정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결부수를 조정하는 방안으로 개별 필지의 적척수를 가감하는 작업은 용인군의 광무양전 시에도 공공연하게 진행되었음이 이미 밝혀진 바 있다.<sup>37)</sup>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양안에 응탈로 기재된 면세지들의 면적 파악률이 여타 필지들보다 높았다는 점이다. 교리에서는 향교 소유 垸地의 평균 면적비가 0.65로, 여타 대지는 물론 밭보다도 면적 파악률이 높았다. 인왕리에서도 응탈 대상지인 향교 소유 전답, 훈련도감 둔전, 沙里驛 역둔토 등에서는 평균 면적비가 답 0.82, 전 0.57, 대 0.60으로 일반 전답보다 면적 파악률이 높았다. 應頃地에서 오히려 면적을 실제로

37) 김건태, 앞의 2018 책, 142~143면.

가깝게 양전했던 것이다. 이는 향교전에 높은 전품을 부여했던 것처럼, 면세지의 결부수를 높게 책정하여 元結總을 늘리기 위한 방편이었을 것이다. 즉, 광무양전에서 면세지도 빠짐없이 양전하여 양안에 기록하고 해당 전답에 결부를 높게 산정해 줌으로써 결총의 표면상 증대를 꾀하였던 것이다. 또한, 이들 필지가 추후 응탈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은루될 가능성을 애초에 차단할 수 있었다.

전형도 살펴보자. 광무양전에서는 기존의 5가지 전형을 10가지로 늘려 전답 면적 계산에 활용하게 했다. 그러나 이런 방침이 무색하게도 거의 모든 필지가 양안에 직사각형으로 기록되었다. 교리에서는 91.2%의 필지가, 인왕리에서는 95%의 필지가 직 형태로 그려졌다. 이에 대해서는 미리 몇 가지 형태를 정해두고 실제 필지를 그 모양과 근사하게 변형하여 면적을 계산했으리라는 설명과,<sup>38)</sup> 전형의 기능은 해당 필지의 면적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있다.<sup>39)</sup> 광무양전 당시의 면적 파악률이 실면적과 거리가 먼 것을 감안한다면, 후자의 설명이 조금 더 설득력이 높다고 하겠다.

적척수 기재와 전답 도형도 삽입은 분명 양지아문 양안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그 의미와 역할은 조선 내내 사용되어 오던 결부제의 운용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 광해군 대에 기존의 量田使를 均田使로 개칭하며 均賦均稅의 의지를 천명한 이래, 조선의 중앙 정부는 결부제라는 전통적인 제도 속에서 최대한 조세를 균평하게 부과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강구해 왔다. 광무양전 단계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면적과 전품을 조정하며 결부수 자체를 가감하는 형태로 표출된 것이라 생각한다. 기재된 적척수가 실면적과 다른 것도, 각양각색 복잡한 형태의 필지들을 일괄적으로 실제보다 작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치환해 면적을 계산한 것도 그러한 방편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물론 산출된 결부수 자체를 직접적으로 조정하는 대신, 면적과 전품을 증감하며 결부 부담을 조절하는 것은 생각처럼 수월한 작업은 아니었다. 다음의 두 표는 그 어려움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표 10>과 <표 11>은 교리와 인왕리에서 대장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100평당 몇 束의 결부수가 광무양전 당시 책정되었는지 필지 별로 살펴본 것이다. 대체로 토지생산성이 낮은 밭보다는 논에 매겨진 평당 결부수가

38) 조석곤, 앞의 2003 책, 79면.

39) 김진태, 앞의 2018 책, 51면.

더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 후기 통상 콩과 벼의 가격비가 1:2였고 전답 모두에서 쌀로 결세를 수취했음을 감안한다면<sup>40)</sup> 밭의 결부 부담이 논보다 상대적으로 무거웠던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일 지목 내에서도 결부 산정의 편차가 심했음이 드러난다.

한편 교리와 인왕리 광무양안상 결부수는 두 마을에서 모두 100평당 평균 1畧 3束이었다. 이는 동일한 경주군 구정동의 100평당 평균 결부 8束보다 1.5배 높은 수준이었다. 구정동보다 두 마을의 토질이 비옥할 수는 있지만, 동일 군 내의 경작 환경이 1.5배나 차이났을 가능성은 낮다. 다시 말해 광무양전 당시 均平한 양전을 하고자 노력했음에도 동일 군 내의 결부 격차, 동일 지목 내의 결부 편차를 완전하게 없애지는 못했던 것이다.

〈표 10〉 교리 대장 면적 기준 100평당 광무양안상 결부수

단위: 束, 필지

| 구간 \ 양안 지목  | 답  | 전   | 대  | 합계         |
|-------------|----|-----|----|------------|
| 5 미만        | 1  | 11  |    | 12 (3.1)   |
| 5 이상~10 미만  | 6  | 89  | 5  | 100 (25.6) |
| 10 이상~15 미만 | 9  | 123 | 16 | 148 (37.9) |
| 15 이상~20 미만 | 16 | 74  | 9  | 99 (25.3)  |
| 20 이상~25 미만 | 4  | 14  | 2  | 20 (5.1)   |
| 25 이상~30 미만 |    | 5   | 7  | 12 (3.1)   |
| 30 이상       |    |     |    |            |
| 합계          | 36 | 316 | 39 | 391 (100)  |

비고: (비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지목은 양안 기준

40) 조석곤, 앞의 2003 책, 330~331면.

〈표 11〉 인왕리 대장 면적 기준 100평당 광무양안상 결부수

단위: 束, 필지

| 구간 \ 양안 지목  | 답   | 전   | 대  | 합계         |
|-------------|-----|-----|----|------------|
| 5 미만        | 9   | 33  |    | 42 (4.2)   |
| 5 이상~10 미만  | 42  | 191 | 3  | 236 (23.8) |
| 10 이상~15 미만 | 131 | 200 | 13 | 344 (34.7) |
| 15 이상~20 미만 | 124 | 137 | 21 | 282 (28.5) |
| 20 이상~25 미만 | 46  | 15  | 9  | 70 (7.1)   |
| 25 이상~30 미만 | 2   | 1   | 5  | 8 (0.8)    |
| 30 이상       | 8   |     | 1  | 9 (0.9)    |
| 합계          | 362 | 577 | 52 | 991 (100)  |

비고: (비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지목은 양안 기준

#### IV. 광무양전 이전의 결부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의 대조 결과물에 대장상 지번을 기준으로 결수연명부와의 추가 연결 작업을 진행하였다. 결수연명부에는 교리와 인왕리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이 부내면 소재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현황이 정리되어 있다. 연명부에 기재된 정보를 토지대장과 대조하여 교리, 인왕리 소재 필지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추려냈다. 그 결과 두 개 마을에서 양안-연명부-대장의 시계열 대조가 가능해졌다. 결수연명부는 조선총독부에서 지세 부과를 목적으로 과세지를 조사하여 만든 장부였다.<sup>41)</sup> 즉, 당시 지세를 부담하고 있던 필지들만이 기재되고 陳田은 결수연명부의 파악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sup>42)</sup> 그렇다면 결수연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필지는 말 그대로 경작되지 않는 陳田이었을까. 다시 말해 농사를 짓고 있는 起田은 모두 공식적으로 지세를

41) 남기현, 「창원군 토지조사사업의 진행과정」, 한국역사연구회 토지대장연구반, 『일제의 창원군 토지조사사업』, 선인, 2013, 54면.

42) 최원규, 앞의 2011 논문, 45면.

부담하고 있었는가. 다음 그림들에서 연명부에 누락된 필지들의 위치를 살펴보면 약간의 의문을 가지게 된다.

경주 결수연명부에 기록되지 않은 필지는 크게 두 경우로 나뉘볼 수 있다.

- ① 교리나 인왕리에 거주하지 않는 부재지주 소유 필지인 경우
- ② 결수연명부 작성 시 참고한 舊양안, 행심책, 깃기 등에 해당 필지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음 <표 12>에 결수연명부에 기재/미기재된 필지수를 제시해 보았다. 표에서 ‘부재지주’로 분류된 부분은 ①번에, ‘재지지주’로 분류된 부분은 ②번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표 12> 부내면 결수연명부 필지 기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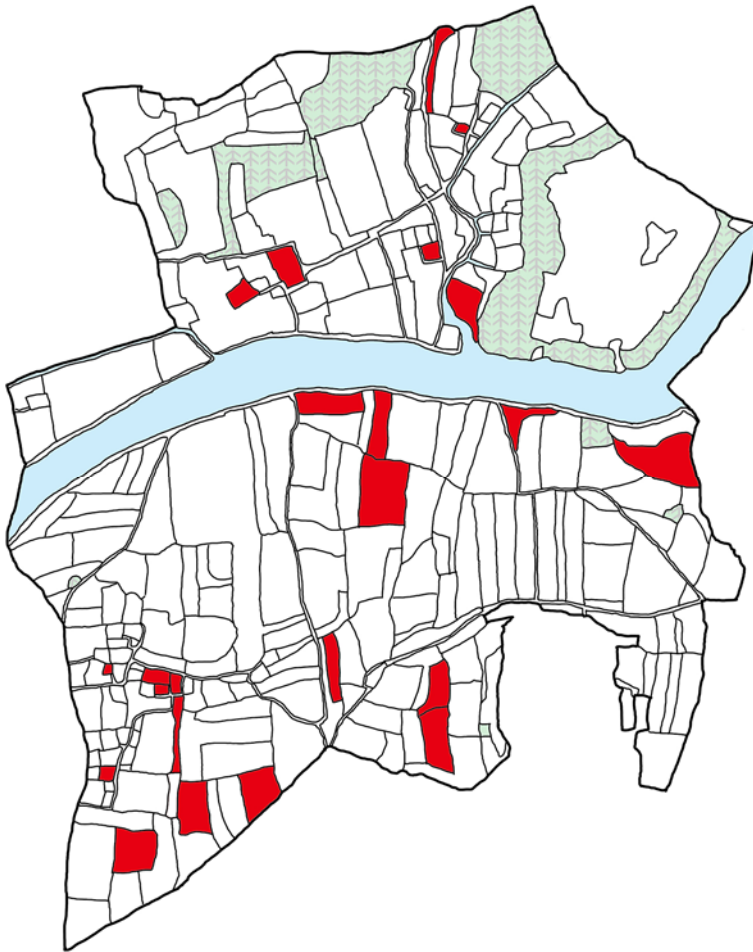
단위: 필지

| 장부    | 리    |     | 교리   |                             |      |     | 인왕리 |                                     |     |  |
|-------|------|-----|------|-----------------------------|------|-----|-----|-------------------------------------|-----|--|
|       | 토지대장 |     | 273  |                             |      |     | 909 |                                     |     |  |
| 결수연명부 | 기재   | 213 |      |                             |      | 기재  | 602 |                                     |     |  |
|       | 미기재  | 60  | 부재지주 | 30                          |      | 미기재 | 307 | 부재지주                                | 236 |  |
|       |      |     | 재지지주 | 23<br>(30 中 임야 5, 분묘지 2 제외) | 재지지주 |     |     | 51<br>(71 中 임야 8, 분묘지 11, 사적지 1 제외) |     |  |
|       |      |     |      |                             |      |     |     |                                     |     |  |

교리, 인왕리 토지대장에는 각기 273필지, 909필지가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답·전·대 지목 중 교리 23필지, 인왕리 51필지는 재지지주(교리, 인왕리 거주) 소유임에도 결수연명부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인왕리의 51필지 중 광무양안-토지대장 매칭이 수행되지 않은 것이 15필지이므로 이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두 마을에서 총 59필지가 광무양안, 토지대장에는 기록되어 있음에도 결수연명부에는 누락된 상태였던 것이다. <그림 7>과 <그림 8>은 이들 필지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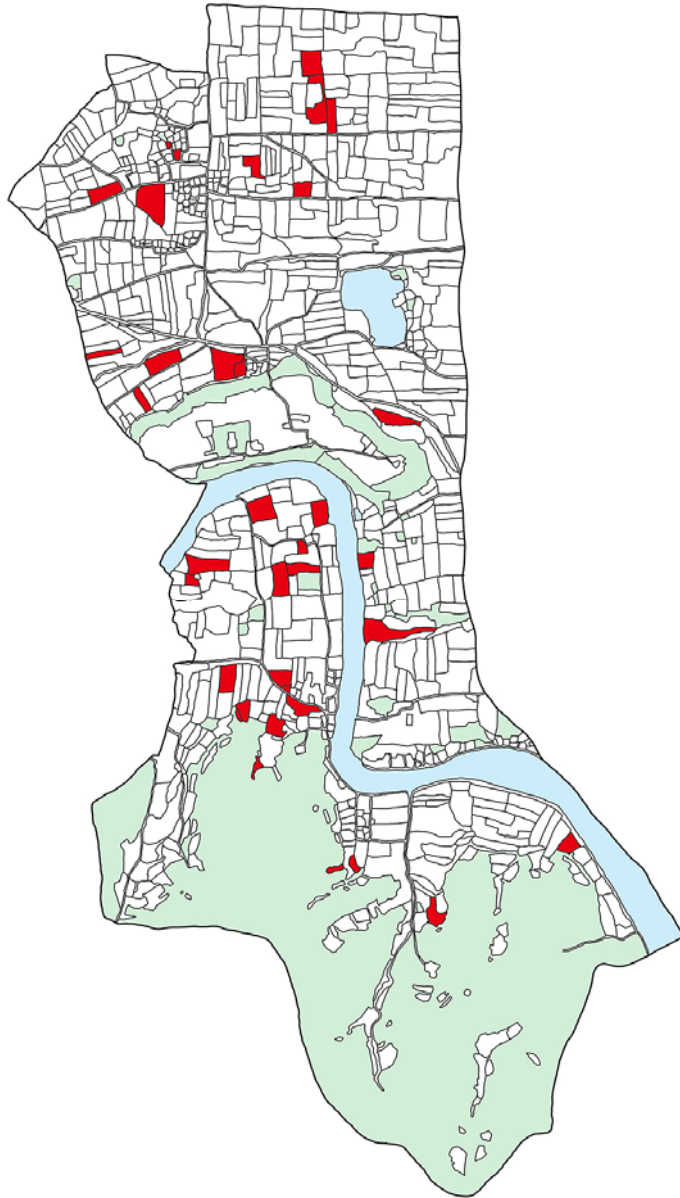
결수연명부에 미기재된 59필지는 부재지주 소유가 아니므로,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 공식적 징세 장부에 해당 필지의 정보가 실려있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기왕에

는 이들이 陳田 상태였기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었다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지도에 표시된 필지들의 위치를 보면 활발히 경작 중인 필지들 한가운데 끼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때기의 땅이 아쉬운 19세기 후반 상황에서 농작이 한창인 경지 옆에 이토록 넓은 陳田을 버려뒀을리 만무하다.



비고: ■ 임야, ■ 강, ■ 결수연명부 미기재 필지.  
광무양안-토지대장 매칭 가능 필지에 한함  
〈그림 7〉 교리 결수연명부 미기재 필지 (부재지주 소유 필지 제외)

광무양안과 결수연명부의 結負 비교



비고: 임야, 강 및 池沼, 결수연명부 미기재 필지.

광무양안-토지대장 매칭 가능 필지에 한함

〈그림 8〉 인왕리 결수연명부 미기재 필지 (부채지주 소유 필지 제외)

이들이 면세지라서 징세 장부에 빠져 있었을 가능성도 물론 존재한다. 연명부에서 발견할 수 없는 59필지는 대장상 총 40명의 소유지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중 면세지일 가능성이 있는 경주군 향교 소유지는 대장상 2필지 194평에 불과하다.<sup>43)</sup> 그러므로 나머지 57필지는 위치상 陳田으로 보기 어려우면서, 소유관계상 면세지일 가능성도 낮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필지는 왜 결수연명부에 기재되지 않았던 것일까? 아마도 광무양안 이전의 공식 징세 장부 자체에서 이들은 빠져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물리적으로 陳田은 아니었으나, 장부상의 隱漏된 陳田이었던 것이다.<sup>44)</sup> 즉, 이들이 바로 조선 후기 隱漏結의 실체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는 경작 중인 起田임에도 공식 수취 과정에서 陳田으로 분류, 누락되어 전결세 부담을 면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해당 필지가 실제로 전혀 납세 부담이 없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은루결이 향리들의 수입을 보장하는, 지방재원의 일부로 활용되었음을 시사하는 『牧民心書』의 내용을 고려할 때, 연명부에 빠져 있던 필지들은 공식 장부에서는 누락되어 있으나 향리들의 수입원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45)</sup> 지방 재정에 유용되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이들 중에는 최부자집과 관련있는 崔鉉敎, 崔浚의 소유지가 12필지 7220평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징세 장부에서 누락된 필지들은 당대 향촌 사회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지닌 이들의 소유지였다고 판단된다.

해당 필지들은 광무양전에서는 모두 양안에 기재되었다. 59필지를 새로이 양안에 기재하면서 광무양전은 이들에 4結 1負에 달하는 무척 높은 결부를 부과하였다. 기존에 전세를 납부하지 않는 필지들을 새로 잡아내고, 이들에게 자호 1개에 육박할 정도의 높은 결부를 책정해 내는 작업은 분명 순탄치만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광무양전은 기존의 감시망에서 배제되어 있던 상태의 필지들을 모두 장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결수연명부를 통해 필지별 파악이 심화되었다는 설명도 있지만<sup>46)</sup> 오히려 광무양안을

43) 이조차도 광무양안에서는 향교가 아닌 여타 개인의 이름으로 기재되어 應頃로 처리되지 않은 필지들이었다.

44) 『牧民心書』 戶典 田政에서 查陳과 관련하여 “凡查陳有兩樣，一曰僞查，二曰眞查。僞查者，……查彼僞陳，充此眞陳，不亦善乎?”라는 대목이 등장한다. 공식 세입세출에서 은루된 장부상의 陳田은 정약용의 표현에 의하자면 僞陳이라 할 수 있다.

45) 『牧民心書』 戶典 田政 참조.

46) 조석곤, 앞의 2003 책, 242면.

광무양안과 결수연명부의 結負 비교

통해 누락 없는 필지 파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표 13〉 교리 대장 면적 기준 100평당 결수연명부상 결부수

단위: 束, 필지

| 구간 \ 연명부 지목 | 답  | 전   | 대  | 합계        |
|-------------|----|-----|----|-----------|
| 5 미만        |    |     | 7  | 7 (2.8)   |
| 5 이상~10 미만  | 7  | 30  | 13 | 50 (20.3) |
| 10 이상~15 미만 | 25 | 58  | 13 | 96 (39.0) |
| 15 이상~20 미만 | 19 | 26  | 10 | 55 (22.4) |
| 20 이상~25 미만 | 2  | 10  | 2  | 14 (5.7)  |
| 25 이상~30 미만 | 1  | 8   | 2  | 11 (4.5)  |
| 30 이상       | 1  | 7   | 5  | 13 (5.3)  |
| 합계          | 55 | 139 | 52 | 246 (100) |

비고: (비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지목은 결수연명부 기준

〈표 14〉 인왕리 대장 면적 기준 100평당 결수연명부상 결부수

단위: 束, 필지

| 구간 \ 연명부 지목 | 답   | 전   | 대  | 합계         |
|-------------|-----|-----|----|------------|
| 5 미만        | 12  | 6   | 3  | 21 (5.3)   |
| 5 이상~10 미만  | 20  | 23  | 21 | 64 (16.0)  |
| 10 이상~15 미만 | 58  | 98  | 15 | 171 (42.8) |
| 15 이상~20 미만 | 23  | 44  | 21 | 88 (22.0)  |
| 20 이상~25 미만 | 7   | 3   | 11 | 21 (5.3)   |
| 25 이상~30 미만 | 3   | 6   | 9  | 18 (4.5)   |
| 30 이상       |     | 8   | 9  | 17 (4.3)   |
| 합계          | 123 | 188 | 89 | 400 (100)  |

비고: (비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지목은 결수연명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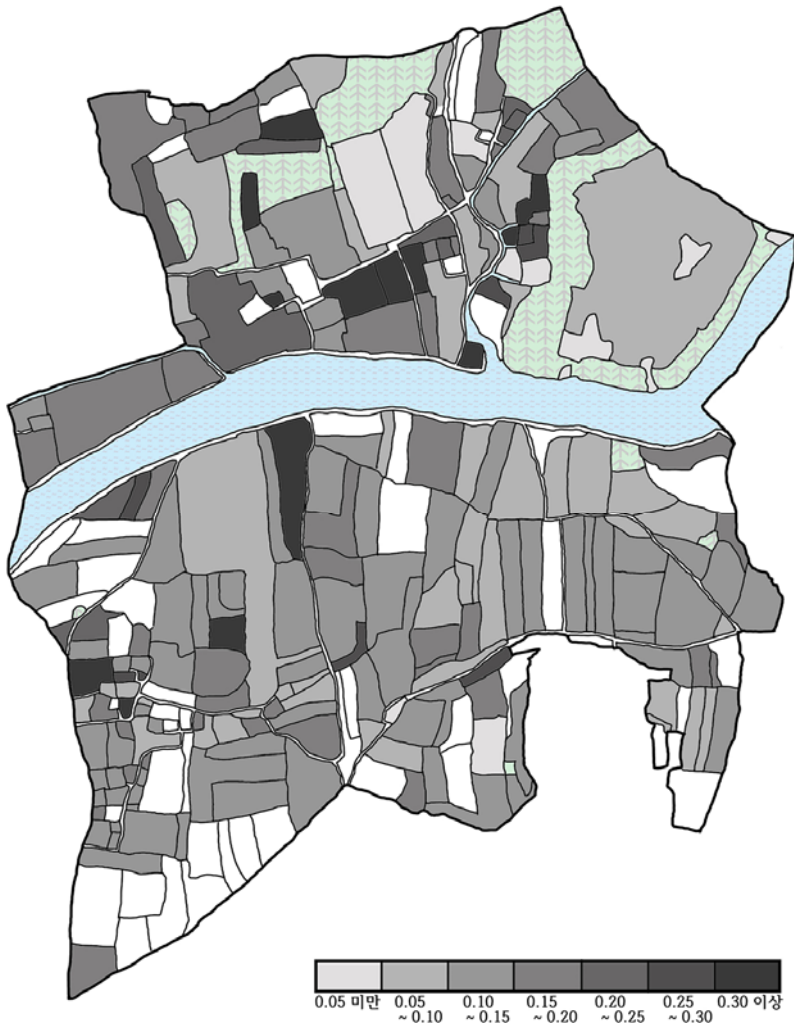
한편 결수연명부에 기재된 필지들은 광무양전 이전부터 토지조사사업이 일단락 될 때 까지 연명부에 기록된 결부수를 기준으로 전결세를 납부하고 있었다. 교리, 인왕리가 광무양전 이전에 부담하고 있던 결부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대장에 기록된 면적 100평당 결수연명수상의 결부수를 계산해보았다.<sup>47)</sup>



〈그림 9〉 교리 토지대장 기준 100평당 광무양안의 결부 부담 분포

47) 〈표 13〉과 〈표 14〉는 결수연명부-토지대장간 대조 가능한 필지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각 표의 총 필지수는 연명부-대장의 매칭쌍 개수를 기준으로 한다. 〈표 3〉, 〈표 4〉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매칭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필지수 합계는 〈표 12〉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광무양안과 결수연명부의 結負 비교



〈그림 10〉 교리 토지대장 기준 100평당 결수연명부의 결부 부담 분포

결수연명부에 기록된 결부 부담의 수준은 이상의 두 개 표를 100평당 양안상 결부 수를 계산했던 <표 10>, <표 11>과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드러난다. 전반적으로 양안에 비해 연명부상의 결부 부담이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광무양안의 결부수가 100평당 평균 1負 3束이었으나 결수연명부의 결부수는 100평당 평균 1負 6束이었다. 특히 100평당 3負 이상을 부담하는 필지가 양안에서는 인왕리 1개 필지였던데 비해,

연명부에서는 교리, 인왕리에서 총 30필지에 달했다. 그중에서도 교리에서 최현교가 소유한 대지가 광무양전 이전에 100평당 21負 3束이라는, 평균 결부 부담의 13배 이상을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눈길을 끈다.<sup>48)</sup> 연명부 기준 결부수는 단순히 양안의 그것보다 높을 뿐 아니라 이처럼 필지간에 불균등한 상태였던 것이다. <표 10>과 <표 13>를 시각화한 앞의 두 개 그림을 비교해보면 이를 더욱 확실하게 살펴볼 수 있다.

<그림 9>는 교리의 100평당 광무양안상 결부수 구간을 제시한 <표 10>을, <그림 10>은 교리의 100평당 결수연명부상 결부수 구간을 제시한 <표 13>를 필지별로 표시해 본 것이다. 총 7단계의 명도 차이를 두어 매 필지에 해당하는 결부수 구간의 색상을 칠해보았다. 우선 연명부와 달리 광무양전에서는 교리의 거의 모든 필지가 양안에 기록되었음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또한 <그림 9>는 이웃한 필지 간 색상의 명도차가 두드러지지 않는 반면, <그림 10>에서는 얼룩덜룩하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웃 필지 간 명도차가 심하여 100평당 결부 부담에 큰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결수연명부를 토대로 살펴본 광무양전 이전 교리의 전결세 부과 양상은 광무양전 결과물에 비하여 월등히 불균등하고 불균질했던 것이다. 아예 공식적으로 결부 부담을 지지 않는 필지도 많을뿐더러 바로 이웃하여 경작 환경에 큰 차이가 없는 필지들 간에도 평당 결부 부담의 차등이 심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 후기 양전 정책으로 인해 빚어졌다. 1720년 경자양전은 1634년의 갑술양전 당시 전품을 이어받았고, 갑술양전은 조선 전기 양전의 전품 산정 결과를 계승했기 때문이다. 즉, 조선 후기 개별 필지의 전품은 토지의 연작상경화가 진행되고 개간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전기의 전품과 대동소이했던 것이다.<sup>49)</sup> 그 결과 조선 후기 양안에 기록된 개별 필지의 결부수가 큰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광무양전은 이러한 불균등한 결부 산정 실태를 해결하고자 고심하면서, 최대한 많은 필지를 양안에 기록하고 이웃한 필지간에 결부를 고르게 부과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48) 최현교 소유 필지는 결수연명부에서 누락된 것도 존재했으나, 한편으로 연명부에 기재된 필지들은 이처럼 여타 필지보다 높은 결부를 부담하고 있었다. 아마도 지역 사회 내부의 재정 운영 관행에 의한 조정의 결과물이 아닌가 추정해 본다.

49) 김진태, 앞의 1999 논문 참조.

그렇다면 광무양전으로 파악한 총 결부수는 확연히 증가했을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림 10>에서 하얗게 표시된, 기존에 공적 결부 부담을 면제받고 있던 필지들에 새로 결부를 부과한 만큼, 그정도의 總結은 분명 증가했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교리, 인왕리를 통틀어 이러한 필지는 총 59필에 달하였고, 해당 필지에는 4結 1負가 새로이 부과되었다. 더욱이 응탈 처리된 향교 소유 필지 등의 면적 파악률을 높이고 전품을 높게 부과하면서 元結數를 높이고자 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두 개 리에 매겨진 전체 元總은 증가하였을 것이다. 실제로 읍지에 기록된 時起結總을 비교해 보면, 광무양전으로 1871년보다 2,000여 結 정도의 결총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왕의 장부상 陳田이 광무양안에서는 起耕田으로 파악된 결과였다.

〈표 15〉 경상북도 경주군에 책정된 결총

단위: 束

|    | 慶尙道邑誌 (1832) |           | 嶺南邑誌 (1871) |           | 광무양안 (1903) |           |
|----|--------------|-----------|-------------|-----------|-------------|-----------|
| 분류 | 起田           | 起畓        | 起田          | 起畓        | 起田          | 起畓        |
| 결부 | 4,734,141    | 5,229,598 | 4,755,590   | 5,464,787 | 4,978,311   | 7,211,773 |
| 합계 | 9,963,739    |           | 10,220,377  |           | 12,190,084  |           |

출처: 『慶尙道邑誌』,<sup>50)</sup> 『嶺南邑誌』,<sup>51)</sup> 『慶尙北道慶州郡量案』<sup>52)</sup>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매 필지별 결부 부담의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오히려 필지별 결부 부담은 대체로 광무양전 이전보다 감소하였다. 결수연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59필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에서 양안-연명부-토지대장을 대조하며 연명부와 광무양안의 필지별 결부비를 계산해 보았다. 다음의 두 개 표가 그 결과를 보여준다.

50)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邑誌』 1 慶尙道 編, 亞細亞文化社, 1982, 70면.

51)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邑誌』 4 慶尙道 編, 亞細亞文化社, 1987, 11면.

52) 『慶尙北道慶州郡量案』,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古大4258.5-17).

〈표 16〉 교리 양안 지목별 연명부와의 결부비

단위: 필지

| 구간 \ 지목       | 답  | 전   | 대  | 합계        |
|---------------|----|-----|----|-----------|
| 0.5 미만        | 4  | 30  |    | 34 (14.7) |
| 0.5 이상~1.0 미만 | 14 | 71  | 4  | 89 (38.5) |
| 1.0 이상~1.5 미만 | 22 | 49  | 2  | 73 (31.6) |
| 1.5 이상~2.0 미만 | 4  | 16  |    | 20 (8.7)  |
| 2.0 이상~2.5 미만 | 1  | 3   | 2  | 6 (2.6)   |
| 2.5 이상~3.0 미만 |    | 2   | 2  | 4 (1.7)   |
| 3.0 이상~3.5 미만 |    |     | 2  | 2 (0.9)   |
| 3.5 이상~4.0 미만 |    |     |    |           |
| 4.0 이상        |    | 2   | 1  | 3 (1.3)   |
| 합계            | 45 | 173 | 13 | 231 (100) |

비고: (비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표 17〉 인왕리 양안 지목별 연명부와의 결부비

단위: 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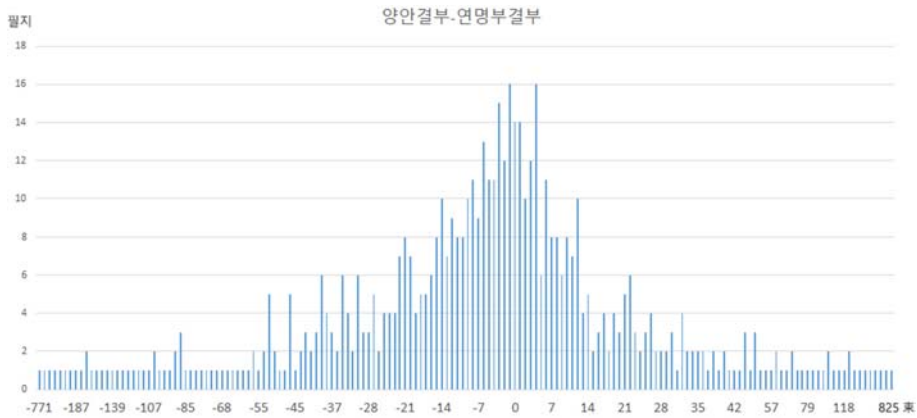
| 구간 \ 지목       | 답  | 전   | 대  | 합계         |
|---------------|----|-----|----|------------|
| 0.5 미만        | 7  | 35  | 3  | 45 (12.8)  |
| 0.5 이상~1.0 미만 | 33 | 122 | 11 | 166 (47.3) |
| 1.0 이상~1.5 미만 | 34 | 55  | 8  | 97 (27.6)  |
| 1.5 이상~2.0 미만 | 4  | 9   | 6  | 19 (5.4)   |
| 2.0 이상~2.5 미만 | 3  | 6   | 2  | 11 (3.1)   |
| 2.5 이상~3.0 미만 | 3  |     | 1  | 4 (1.1)    |
| 3.0 이상~3.5 미만 | 1  |     | 1  | 2 (0.6)    |
| 3.5 이상~4.0 미만 | 1  | 2   |    | 3 (0.9)    |
| 4.0 이상        |    | 3   | 1  | 4 (1.1)    |
| 합계            | 86 | 232 | 33 | 351 (100)  |

비고: (비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표 16>와 <표 17>은 동일한 필지에 대해 연명부상 결부수를 1로 놓았을 때, 양안상 결부수가 얼마인지 계산해 본 것이다. 양안 결부를 연명부 결부로 나눈 값인 셈이다. 값이 1보다 크다면 광무양전 당시 기왕에 부과되고 있던 결부 부담보다 높은 결부를 매긴 것이고, 1보다 작다면 양전시 기존의 부세 결부수보다 낮은 결부가 산정된 것이다. 광무양전을 시작할 당시 “조세수입의 확대라는 명분”으로 전국적인 양전을 결정했다는 사실과<sup>53)</sup> 앞서 결충 확대를 위해 응탈 대상지에서의 결부수를 높이고 은루결 확보에 노력했음을 상기한다면 필지별 결부수 역시 기왕보다 높이려 했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분석 결과는 광무양전을 통해 오히려 절반 이상의 필지들에서 결부 부담이 전보다 낮아졌음을 보여준다. 특히 논보다는 밭에서 결부수가 하향 조정된 경우가 많았다. 이는 광무양전에서 결부수를 조정할 때 지목별 토지생산성 격차를 고려했음을 반증한다. 과거 결부 산정 내력에 비해 광무양전에서의 결부수가 좀 더 실제 토지생산성에 걸맞게 조정된 것이다.

광무양전시 매 필지에서 결부를 무조건 줄여 주기만 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결부가 이전보다 늘어난 필지들도 적지 않았다. 가장 많이 결부가 줄어든 필지에서는 77負 1束이 줄었고, 전보다 결부수가 증가한 필지 중에는 82負 5束이나 늘어난 곳도 있었다. <그림 11>은 매 필지별로 광무양안에 기재된 결부수에서 결수연명부에 기재된 결부수를 뺀 수치를 그래프로 그려본 것이다. 0보다 낮은 부분의 비중이 높아 광무양전에서 결부 부담이 줄어든 필지가 상대적으로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반대편도 그에 못지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그림 7>, <그림 8>과 <그림 10>에서 드러났듯 19세기 당시 경주군 교리, 인왕리에서 隱漏結이 적지 않았고, 필지별 결부수의 불균등함이 심한 상태에서 은루결을 최대한 찾아내고 개별 필지에서 결부수를 때로는 더하고 때로는 덜어줌으로써 均稅 이념을 달성하고자 했던 광무양전의 성격을 보여준다 하겠다.

53) 왕현중, 앞의 2016 책, 206면.



〈그림 11〉 교리 (광무양안 결부수-결수연명부 결부수) 결과

전반적으로 결부 부담이 기존보다 감소된 필지가 많은 상황에서 연명부에 기재된 필지들의 양안상 결부수는 연명부 대비 4結 12負 9束이나 줄었다. “隱結의 발견과 加結의 폐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收稅實結의 보전 및 확대에 양전의 목적”이 있었음에도<sup>54)</sup> 무차별적인 결부 증가를 꾀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대신 광무양전은 은루결을 잡아내고, 필지 간 형평을 기하고, 최대한 많은 필지를 양안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수세실결을 높이하고자 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광무양전시 두 개 마을에서 결부수 가감을 통해 줄어든 결부수인 4結 12負 9束과 기왕의 징세 장부에서 누락되어 있던 59필지를 새로 광무양안에 기재하며 부여한 결부수인 4結 1負가 얼추 비슷한 수준이라는 대목이다. <그림 7>, <그림 8>로 설명하자면 색칠이 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광무양전으로 4結 12負 9束만큼의 부담이 줄고, 채색된 필지에서는 4結 1負가 새로 매겨졌던 것이다. 이처럼 양전 당시 한 편에서는 필지 간 결부 부담을 균등하게 조정하기 위해 전체 결부수를 줄여 주고, 다른 한 편에서는 기존 장부에서 누락되어 있던 필지들을 모두 잡아내어 새로이 결부를 부과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전체 결부 부담 상 오히려 11負 9束이 줄어들며 總結數 자체에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던 것이다.<sup>55)</sup> 추측건대 기존에 전결세 부담에서 공식적으로 누락되어 있던 4결 여의 필지를 광무양안에 새로 기재하

54) 이영호, 앞의 2018 책, 124면.

55) 물론 그간 은루되던 장부상 陳田이 起田으로 잡히면서 수세실결은 늘어나게 되었다.

는 대신, 여타 필지의 결부 부담을 그만큼 줄여 주며 지역 사회의 반발을 잠재우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광무양전의 의의는 결부수 증대를 통한 국가 재정 확대의 측면보다는 은루결 색출과 필지 간 부담 격차 조정을 통한 전국적인 均賦均稅 달성에 있었던 것이다.

## V. 맺음말

본고는 경상북도 경주군 부내면 교리와 인왕리를 대상으로 광무양안, 결수연명부, 토지대장 세 가지 장부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결부수를 비교함으로써 전결세 부과 양상의 변화를 살피고 광무양전의 성격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2세기에 가까운 시간 동안 공백 상태에 있던 전국 단위 양전은 대한제국기의 광무양전으로 다시금 시도되었다. 그 역사적 의의만큼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토지소유권, 근대성 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광무양전, 양안이 국가 재정 운영의 측면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광무양안의 기본적 역할인 전결세 수취 문제에 주목하여 결부 관련 정보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광무양전에서는 경작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이 낮은 필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필지를 양안에 기록해 두었다. 그와 달리 결수연명부에서는 적지 않은 필지가 누락되어 있었는데, 이는 아마도 당시 공적 장부로부터 은루되던 필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두 마을의 광무양전 당시 지목 간 토지 생산력 격차, 지역별 부세 부담 차이 등을 고려하면서 전품 산정 및 면적 파악 결과를 조정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이러한 간접적인 방식의 재조정은 쉽지만은 않아서, 온전한 균부균세를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 결과물을 기왕의 전결세 수취 정보를 담고 있는 결수연명부와 비교해 본 결과, 기존의 불균질한 수취 양태를 월등하게 개선했음을 알 수 있었다. 광무양전 당시 4결 여에 달하는 은루결을 양안에 빠짐없이 기재하고, 대신 여타 필지의 결부수를 조정해 주어 다시 4결 가량을 감해 주면서 지역 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필지 간의 결부 부담을 고르게 만들었던 것이다. 결국, 광무양전의 의의는 결부수를 증대시켜 국가 재정을 확충한다는 측면보

다는 은루결을 색출하고 필지 간 부담을 균등하게 조정하며 전국적인 균부균세를 달성하는 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결부제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그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sup>56)</sup> “토지등급의 조정에 의한 결수의 ‘조작’은 (……) 결부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현실을 보여 주었다.”<sup>57)</sup> 표현은 결부의 ‘조작’ 가능성을 내재한 결부제가 그 자체로서 한계를 품은 제도라는 인식을 보여준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토지 생산력을 오롯이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조차 부동산 공시지가는 현실의 토지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며, 개인의 연말정산 정보도 일일이 개별 확인을 거쳐야만 완성된다. 하물며 개개인, 개별 필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파악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았던 조선 사회에 있어서랴. 대신 이들은 그들에게 이미 역사적 제도로 자리잡은 결부제를 지속시켜 나가면서도, 전품을 조정하고 면적을 줄이는 등의 새로운 양전 방식을 고심하며 역사적 제도와 현실적 고민 사이의 균형을 달성하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광무양안과 결수연명부에 기재된 결부수에는 이러한 당대인들의 고심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투고일: 2020.05.05

심사일: 2020.09.01

게재확정일: 2020.09.07

56) 송찬섭, 「갑오개혁기 결세제도의 개혁과 환곡제의 변화」, 『역사연구』 창간호, 역사학연구소, 1992; 오인택, 「朝鮮後期の 量案과 土地文書」, 『역사와 세계』 20, 효원사학회, 1996; 조석근, 앞의 2003 책; 이영호, 앞의 2018 책.

57) 이영호, 앞의 2018 책, 153면.

## 참고문헌

- 『經國大典』  
『高宗實錄』  
『牧民心書』  
『慶尙北道慶州郡量案』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古大4258.5-17).  
『경주군 부내면 결수연명부』, 경주시청 소장  
『경주군 부내면 교리, 인왕리 토지대장』, 경주시청 소장  
『경주군 부내면 교리, 인왕리 지적도』, 국가기록원 소장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上, 龍溪書舍  
  
경주시, 『慶州地籍史』, 우물, 2007  
김건태, 『대한제국의 양전』, 경인문화사, 2018  
김홍식 외, 『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 민음사, 1990  
\_\_\_\_\_,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연구』, 민음사, 1997  
왕현종, 『한국 근대 토지제도의 형성과 양안-지주와 농민의 등재 기록과 변화』, 해안, 2016  
이영호, 『근대전환기 토지정책과 토지조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8  
이영훈, 『朝鮮後期社會經濟史』, 한길사, 1988  
조석곤, 『한국 근대 토지제도의 형성』, 해남, 2003  
한국역사연구회 토지대장반,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민음사, 1995  
\_\_\_\_\_, 『대한제국의 토지제도와 근대』, 해안, 2010  
\_\_\_\_\_, 『일제의 창원군 토지조사사업』, 선인, 2013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邑誌』 1 慶尙道 編, 亞細亞文化社, 1982  
\_\_\_\_\_, 『邑誌』 4 慶尙道 編, 亞細亞文化社, 1987  
  
김건태, 「갑술·경자양전의 성격-칠곡 석전 광주이씨가 전답안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31, 한국역사연구회, 1999  
김소라,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을 통해 본 광무양전의 성격-忠南 韓山郡 昌外里와 慶北 慶州郡 九政洞 사례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4  
\_\_\_\_\_, 「광무양안에 기재된 방향, 면적, 등급의 의미-토지대장과의 비교연구」, 『고문서연구』 57, 한국고문서학회, 2020  
김용섭, 「光武年間の 量田・地契事業」, 『한국근대농업사연구』 下, 일조각, 1984  
남기현, 「창원군 토지조사사업의 진행과정」, 『일제의 창원군 토지조사사업』, 선인, 2013

- 미야지마 히로시, 「光武量案의 역사적 성격」, 김홍식 외, 『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 민음사, 1990
- 박홍수, 「李朝尺度에 關한 研究」, 『대동문화연구』 4,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67
- 배병일, 「일제하 토지조사사업에 있어서의 결수연명부」, 『한양법학』 26, 한양법학회, 2015
- 송찬섭, 「갑오개혁기 결세제도의 개혁과 환곡제의 변화」, 『역사연구』 창간호, 역사학연구소, 1992
- 오인택, 「17·18세기 量田事業 研究」,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1996
- \_\_\_\_\_, 「朝鮮後期の 量案과 土地文書」, 『역사와 세계』 20, 효원사학회, 1996
- 왕현중, 「대한제국기 量田·地契事業의 추진과정과 성격」, 한국역사연구회 토지대장반,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민음사, 1995
- 최원규, 「창원군 토지조사사업 관계장부의 종류와 성격」, 한국역사연구회 토지대장연구반, 『일제의 창원군 토지조사와 장부』, 선인, 2011

## Comparison of Land Taxation Revenues in Land Registers from the Late Chosŏn to the Twentieth Century

Kim, So-ra

This paper focused on changes in the amount of land taxation since the 19th century by comparing three types of land registers. Through this comparison, the characteristics of Kwangmu Land Survey are considered. A large number of hidden farmlands were exposed by the Survey which aimed to expand land tax revenues. To achieve equilibrium among parcels, the Korean Empire run Kyŏlbu system flexibly.

Key Words : Land surveys, Land registers, Kyŏlbu system, Land taxation, Hidden tax sources

